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충청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20
----------	-----

2023. 3. 24.(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박지현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3년 3월 3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3월 6일

라. 상정일자 : 2023년 3월 16일

- 제4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유재목 의원)

가. 제안이유

-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에 특히 취약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충청북도 도민의 건강 안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폭염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폭염저감시설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 (김홍식 수석전문위원)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세계보건기구(WHO)가 21세기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폭염을 지목하였고, 우리나라도 폭염에 의해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사망자 중 60대 이상 고령층 비율이 전체 75%를 차지하여 폭염취약계층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음.

이에 매년 폭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대책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조례제정의 정당성 및 적합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 「자연재난대책법」 제3조는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과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음.

< 자연재해대책법 >

제3조(책무)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5.(생략)

6. 폭염대책

가. 폭염피해 예방대책

나. 폭염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계 구축

라.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7. ~ 9.(생략)

○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는 「자연재난대책법」 제3조에 따른 폭염대책을 반영하여 충청북도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종합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8조는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재난도우미의 지정·운영과 기상청에서 폭염 특보가 발령되었을 때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실시를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9조는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냉방물품 보급 등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1조는 폭염을 저감하기 위해 도, 시·군 및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조례안 예고('23. 3. 8.~'23. 3.14.)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18년 10월 전남에서 관련 조례를 최초로 제정하여 현재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중에 있음.
- 관련부서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타 “**특이한 사항**”은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례안은 총 1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실태조사, 폭염취약계층의 지원 및 폭염저감시설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문 내용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4. 검토의견

- 폭염에 의한 인명피해는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망 장소도 응급실 등 의료기관이 전체 50%로 나타나는 등 매년 폭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바,
- 「충청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에 특히 취약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요한 시책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안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충청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에 의한 인명사고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폭염으로 인한 충청북도민의 생명과 건강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시장·군수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 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소년·소녀 가장 세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 라. 13세 미만의 어린이
 - 마. 65세 이상의 노인
4. “폭염저감시설”은 폭염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별표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폭염으로부터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폭염으로 인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시·군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도민은 폭염특보가 발령된 경우 도와 시·군 등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고, 폭염 피해 예방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른 폭염대책을 반영하여 충청북도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폭염대책기간에 이르기 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현황 및 전망
2.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의 운영 및 관리 계획
5.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
6.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계획
7.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8.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폭염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도지사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농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
2. 제8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활동 실시
3.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도지사는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재난·복지·보건부서 담당 공무원 중 재난도우미로 지정된 공무원
6. 재난, 재해 관련 전문가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도지사는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물품 보급 사업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무더위쉼터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시설의 냉방기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폭염저감시설 사업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폭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내 시·군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2. 폭염대응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폭염저감시설 사업 등을 지원할 경우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제12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제 구축) 도지사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폭염저감시설의 종류(제2조제4호 관련)

폭염저감시설	정 의
지붕차열도장 (쿨루프)	지붕 또는 옥상에 태양광선을 반사하여 건물에 흡수되는 태양열을 저감시킬 수 있는 도료를 시공하여 건물의 실내온도를 낮추는 것을 말한다.
물안개 분사장치 (쿨링포그)	물 분자를 분사하여 주위의 온도를 낮추는 것으로 미세 물 분자의 기화를 이용하는 냉방장치를 말한다.
도로차열포장	배수성 아스콘 및 차열성 포장을 통하여 노면 온도를 저감시키는 도로포장 방법을 말한다.
그늘막 및 그늘목	도로변과 공공시설 등에 파라솔 등의 설치 및 나무식재를 통해 무더운 여름철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보도나무그늘 만들기	여름철 도심 내 보행자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등나무터널 등과 같이 나무를 이용한 자연그늘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수경시설	분수나 호수·인공폭포, 벽천·생태연못 등 물을 이용하여 만든 시설물 또는 조형물을 말한다.
기타시설	상기의 시설물 외에 여름철 도시의 온도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을 말한다.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2., 2017. 10. 24., 2020. 1. 29.>

1. ~ 5. (생략)

6. 폭염대책

가. 폭염피해 예방대책

나. 폭염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제 구축

라.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7. ~ 9. (생략)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 점검 방법, 점검 결과의 기록·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연재해의 유형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인 대처 요령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업무지침, 주민 교육·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7. 3. 21.>

⑥ 국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자연재난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폭염피해 예방 및 상황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2. 비용발생 요인

- 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무더위쉼터 지원 폭염저감시설 사업의 지원

3. 관련조문

- 안 제9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도지사는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물품 보급 사업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 제10조(무더위쉼터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시설의 냉방기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안 제11조(폭염저감시설 사업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폭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내 시·군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2. 폭염대응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폭염저감시설 사업 등을 지원할 경우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 제12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2023 ~ 2025(5년간) 추계

